

〈별첨자료 3〉

I. '전시 성적 강제피해자 보상요강'에 관한 의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 '위안부'의 보상입법을 요구하는 변호단 협의회(좌장 아이타니 구니오)는 지난 9월 정대협과 유족회 등에 이 요강안에 대한 한국측의 입장을 묻는 요강법안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한국은 6명의 변호사,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보냈다. (김창록교수(부산대 법대), 조시현교수(성신여대 법대), 홍성필교수(이화여대 법대), 박찬운 변호사, 장완익 변호사, 박원순 변호사)

우선 6명 전문가의 의견은 두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 번째, 보상요강을 보완하되 분명히 보상이 아닌 배상의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의견, 두 번째, 보상요강의 목적을 새로운 권리창출이 아닌, 국제법적인 근거에 의해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음의 내용은 다양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조 목적

- 1) 사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배상으로 해야 한다.
- 2) 일본국 헌법의 가치보다는 국제법에 근거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하고,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 3) 다음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안
 - : 성적 행위를 강제하고 -> 성적 노예화를 통해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을 강요함으로써 조기 사망, 극심한 질병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정상인으로서 사회생활의 영위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하고
 - : 전후 그 피해를 방치한 것 -> 동시에 전후 일본국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부담하는 범죄자의 처벌 및 배상 등의 책임을 수행할 것을 게을리함으로써
 - : 일본국 헌법의 근간적 가치에 관한 기본적 인권의 침해였다고 인정하고 -> 국제법 및 일본국 헌법에 대한 위반행위임을 인정하고
 - : 이들 여성에 대하여 -> 피해자들에 대하여
 - : 사죄하고 보상하는 것을 -> 책임자 처벌과 배상을 포함한 국제법과 헌법이 요구하는 법률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2조 전시성적 강제피해자

- 1) 새로운 이름보다는 일본군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라는 말이 보다 적절하다.
- 2) 성적 노예제를 법률적으로 분명히 강조해야 하는 이유는 인도에 반한 죄, 전시 여성에 관한 중대한 인권침해로서의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 3) 대상지역을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것보다는 독립된 기구에서 지정해야한다.
- 4) 법률에서 자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의무조항으로 피해국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 5) 피해자 대표들과의 합의 하에 유엔인권기구, 또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혹은 국제법전문가 등 객관적 위치의 인사를 포함시킨 일본정부, 제3자적 전문가들, 피해자의 3자구조적 위

원회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조 보상

- 1) 피해자의 범위를 1993년 일본정부 보고서 발표이후의 생존자와 유족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피해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
- 2) 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 방치된 책임이 아니라 성적 강제피해 자체이므로 배상등의 조치가 행해져야 한다.
- 3) 보상만이 아닌 책임자처벌, 사죄, 기념관 설치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집단적 배상으로서 병원, 요양시설, 무의탁 주거시설 등의 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 보상금액과 방법은 일단 피해형태에 따라 일괄적으로 기본금액을 지불하게 하고, 개인에 따른 사정에 맞추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조 보상위원회

- 1) 보상위원회는 진상조사 사업도 병행해야 하며 그 명칭도 진상규명 및 배상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
- 2) 위원회 구성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기초한 3자구조적 위원회가 타당하며 조사를 위한 신청은 개인 및 NGO 등 단체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한다.
: 위원회에 의한 직권에 의한 탐지도 가능하게 하며 구체적인 공개 및 처리에 관해서는 당사자들의 명백한 동의를 필요로 한다.
: 피해입증 책임에 있어서 당사자가 대체의 정황을 포함하여 일단의 증거를 제출하면 신청인의 자격이 주어지도록 하고, 일본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반증을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입증책임의 전환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위원회는 피해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
- 4) 맥두걸 보고서(1998) 65항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일본정부와 함께 국내외의 지도급인 사들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이들은 금전적 배상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배상계획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배상위원회를 구성하여 그것을 통해 일본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야한다.

II. 일본 내 입법운동의 흐름과 동향

A. 조사회법 설치

1. 국회의 흐름

- 1) 원래는 항구평화를 위한 진상규명조사회법으로 출발했으나 상황을 고려하여 국립국회도서관법의 일부를 손질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 2) 현재 약 110여명이 입안에 찬성하였으며 1999년 상반기부터 심의가 시작되어 올 11월 국회심의가 진행중이다. 11월 4일은 조사회법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 3) 현재 민주당, 사민당, 공산당, 자민당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명당은 적극적인 편이다. 그러나 조만간 자민당, 자유당, 공명당 3당 연립이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공명당의 입장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4)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중의원 500명 중 250명 이상, 참의원 250명 중 130명 정도가 찬성해야 법제화 가능성이 있다.

2. 시민단체의 흐름: 조사회법 설치를 위한 시민회의

1) 전쟁책임자료센터의 아라이 시니치가 회장직을 맡고 있다.

2) 회원단체로는 강제연행네트워크, 한국조선BC급 전범지원하는 회, 바우넷 재팬, 毒가스展新宿實行委, 재한피폭자문제시민회의, 법률가유식자회, 재일위안부를 지원하는 회, 가톨릭정평협, 新宿부인문제를 생각하는 회,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 등 1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3) 현재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B. 시모노세키 재판 판결을 살리는 회

1. 전 '위안부'의 보상입법을 요구하는 변호단 협의회

1) 1999.1.21 전 '위안부'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맡고 있는 7개 변호인단이 시모노세키 재판 판결의 취지를 살려 입법적 해결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결성되었다.

(부산중군위안부·여자정신대 공식사죄 청구변호단, 필리핀 중군위안부 국가보상 청구소송 변호단, 재일 전 위안부 사죄 보상 청구소송 변호인단, 네덜란드 전 포로·민간억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호단, 중국인 전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 변호단, 중국 산서성 성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변호단, 대만 '위안부' 배상 청구변호단)

2) 전 '위안부' 보상입법을 구하는 회의 아이타구 구니오 변호사가 회장을 맡고 있다.

3) 전시 성적 강제피해자 보상요강(1차안)을 작성하여 피해국에게 발송했다.

2. 시모노세키 재판을 살리는 회

1) 1998년 8월 결성하여, 시모노세키 재판 판결을 살리기 위한 회를 결성하여, 전 '위안부'의 보상입법을 요구하는 변호단 협의회를 지원하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송신도 할머니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의 양증자씨가 연락을 맡고 있다.

C. '위안부' 문제의 입법해결을 구하는 회

1. 전후처리의 입법을 구하는 법률가·유식자회

전 일변연 회장인 쓰치야 코젠이 회장으로 있으면서, '전시 성적 강제피해에 대한 국가배상법' 요강을 작성하여 정대협으로 보냈으며, 1999.3월 정대협의견을 보냈다.

2. 위안부 문제의 입법해결을 구하는 회

주로 개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전후보상캠페인의 아리미즈 켄이 실무를 맡고 있다